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성재 (법무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일회성으로 종료되는 경우가 드물어 사건 발생 초기부터 범죄피해자의 일상이 회복될 때까지 단계별로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하나, 사건 후반부로 갈수록 지원 안내 빈도 등이 처음에 비해 줄어 지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검사가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범죄피해자 지원내용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하여,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빠짐없이 제공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진행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 ① 검사는 각 호의 지원 사항을 범죄피해자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검찰청 피해자지원 담당 공무원, 사법경찰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또는 시설의 직원, 의사, 변호사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손실 복구 지원 등
2. 법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사법 지원 등
3. 법 제9조에 따른 신변 보호 등
4. 법 제16조 및 제28조에 따른 구조금 및 긴급구조금 지급 등
5. 그 밖의 범죄피해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지원이나 복지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사건관리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구성원은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회의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에게 필요한 자료와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조의3(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 ①</u> <u>검사는 각 호의 지원 사항을 범죄피해자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검찰청 피해자지원 담당 공무원, 사법경찰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또는 시설의 직원, 의사, 변호사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u> <u>1. 법 제7조에 따른 손실 복구 지원 등</u> <u>2. 법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사법 지원 등</u> <u>3. 법 제9조에 따른 신변 보호 등</u> <u>4. 법 제16조 및 제28조에 따른 구조금 및 긴급구조금 지급 등</u> <u>5. 그 밖의 범죄피해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지원이나 복지서비스</u> <u>② 제1항에 따른 사건관리회의</u>

(이하 “회의”라 한다)의 구성원은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회의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에게 필요한 자료와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인권구조과	
연 락 처	(02) 2110 - 3868